



기본에 충실한 대학, 미래를 준비하는 대학

제주대학교

청탁NO! 청렴YES!
청렴은 우리의 얼굴입니다

수신자 제주대학교 가족회사, 도내·외 기업체, 연구소, 기관 등
(경유)

제목 제주대학교 LINC+사업단 2020학년도 하계 실습학기제(현장실습) 참여 요청

1. 귀 사(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제주대학교 LINC+사업단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는 2020학년도 하계 실습학기제(현장실습)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귀 사(기관)의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가. 사업명: 2020학년도 하계 실습학기제(현장실습)

나. 실습기간: 2020. 6. 29.(월) ~ 8. 30.(일) / 기간 내 4주(20일) 또는 8주(40일) 실습 진행한다. 신청기간: 2020. 5. 11.(월) ~ 6. 17.(수)

※ 학생 실습 신청이 5. 20.(수)부터 시작으로, **5. 19.(화)까지 기업 신청 협조 요청**

라. 신청방법: 제주대 현장실습지원센터 홈페이지(<http://intern.jejunu.ac.kr>) 온라인 신청
마. 의무사항

- 1)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의무 가입 및 가입서류 제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123조)
- 2) 참여학생에 대해 실습기관이 실습지원비를 지급하도록 의무화

바. 주요내용: 불임참조

사. 문 의: 제주대학교 LINC+사업단 현장실습지원센터 강경아, 김미경(064-754-3125, 4416)

- 불임 1. 2020학년도 하계 실습학기제(현장실습) 운영 안내 1부.
2. 제주대학교 현장실습 운영 지침 1부.
3. 현장실습 기관 안내자료 1부. 끝.

LINC플러스사업단장



연구원

김미경

행정실장

박민희

현장실습지원센터장

서규범

단장

2020.05.12.

강철웅

협조자

팀장

강경아

시 행 LINC플러스사업단-1711 (2020.05.12.) 접 수

우 6324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아라일동, 제주대학교)

전화번호 064-754-3125

팩스번호

/

()

/ www.jejunu.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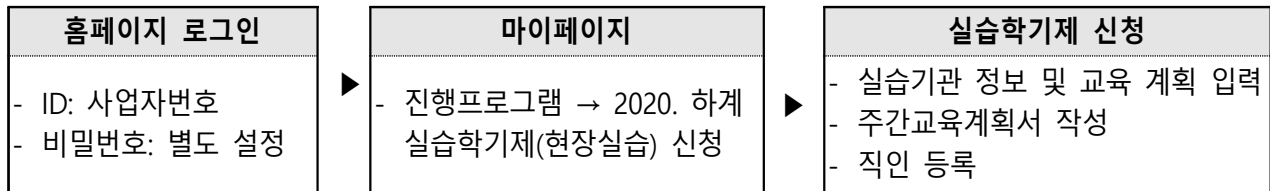
/ 공개

1. 개요

- 가. 사업명: 2020학년도 하계 실습학기제(현장실습)
- 나. 실습기간: 2020. 6. 29.(월) ~ 8. 30.(일) / 기간 내 4주(20일) 또는 8주(40일) 실습 진행
- 다. 기업 신청기간: 2020. 5. 11.(월) ~ 6. 17.(수)
- 라. 참여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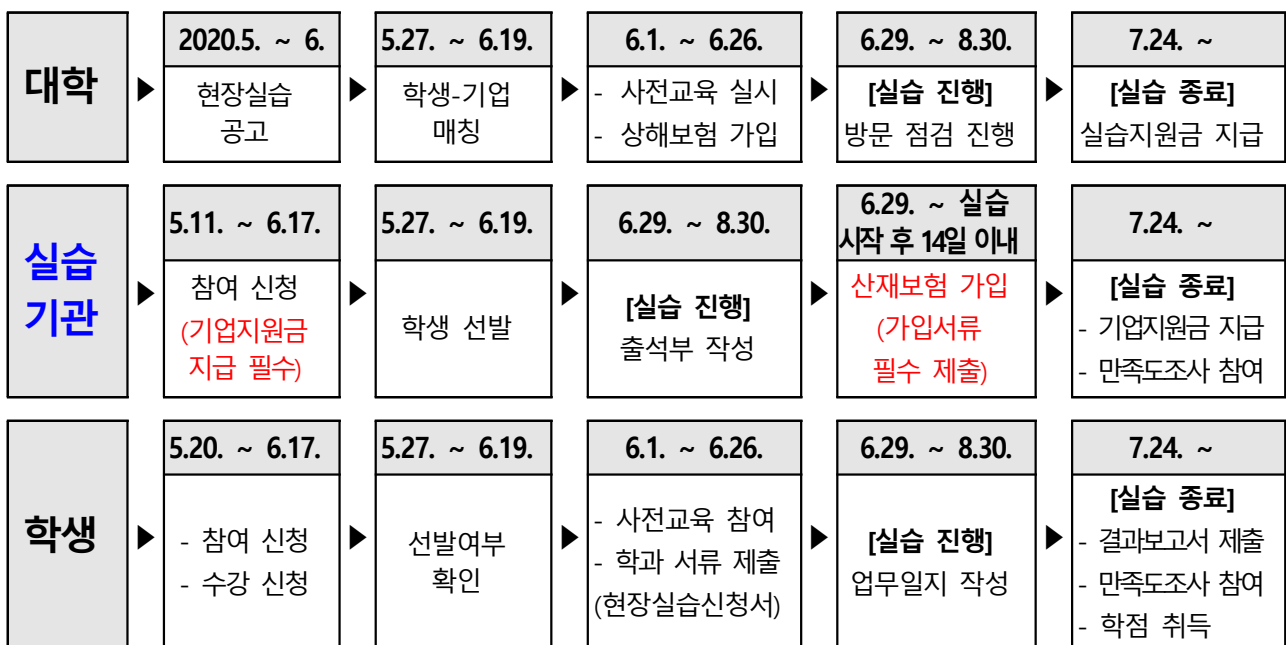
구분	내용	비고
학생	제주대학교 재학생	
실습기관	제주대학교 가족회사, 도내·외 기업체, 연구소, 기관 등	
※ 실습 운영 및 실습지원금 지급 관리 - LINC+사업단: LINC+사업 참여학과 3학년 이상 재학생 - (본부)현장실습지원센터: 제주대학교 1~2학년 재학생, LINC+사업 비참여학과 재학생		

- 마. 참여방법: 제주대 현장실습지원센터 홈페이지(<http://intern.jejunu.ac.kr>) 온라인 신청



2. 2020학년도 하계 실습학기제(현장실습) 운영 내용

- 가. 운영절차



나. 운영 일정

구 분	추진기간	주요내용
<실습기관> 현장실습 참여 신청	2020. 5. 11.(월) ~ 6. 17.(수)	- 제주대 현장실습지원센터 홈페이지: 실습 운영 내용 입력 ※ 학생 실습 신청이 5. 20.(수)부터 시작됩니다. 기업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사전 등록 바랍니다.
<참여학생> 현장실습 교과목 수강신청 및 실습신청	2020. 5. 20.(수) ~ 6. 17.(수)	1. 수강신청: 하영드리미 / 현장실습 교과목 신청 2. 실습기관 선택: 현장실습지원센터 홈페이지 1)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 2) 실습기간 확인, 실습기관 선택
실습기관-참여학생 매칭	2020. 5. 27.(수) ~ 6. 19.(금)	- 실습생 선발 및 실습기관 확정 - 실습생 실습기간 확정
참여학생 명단 (매칭명단) 안내	2020. 6. 22.(월) ~ 6. 26.(금)	- 참여학생 소속 학과에 안내(전공 일치 여부 확인)
오리엔테이션	2020. 6. 1.(월) ~ 6. 26.(금)	- 참여 학생 기본소양 교육 및 행정사항 안내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대처요령 교육 - 안전교육 및 학생 권익보호를 위한 안내 - 온라인 또는 개별 사전 교육 실시
실습학기제 (현장실습) 진행	2020. 6. 29.(월) ~ 8. 30.(일)	- 최종 협의 된 실습기간에 따라 실습 진행 - 4주(20일) 또는 8주(40일) 실습 진행 ※ 실습기관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의무 가입 및 가입서류 제출 (제출처: roddl526@naver.com)
현장 방문지도	2020. 6. 29.(월) ~ 8. 30.(일)	- 현장실습생 현장지도, 현장실습기관 애로사항 확인 - 취업 연계
만족도 조사	2020. 7. 24.(금) ~ 9. 6.(일)	- 참여학생 및 참여기업 실습 만족도조사 실시
실습종료	2020. 7. 24.(금) ~	- 실습생 학점 취득 - 실습지원금 지원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함

3. 현장실습 실습지원금 지원

가. 실습지원비 지급 내용

지급기관	지급 금액	내 용
LINC+	800,000원 / 4주	- 4주(20일) 단위로 지급하며, 취업 또는 상해 등으로 조기 종료 시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원함
실습기관	실습기관 별도 기준	- 참여학생에 대해 실습기관이 실습지원비를 지급하도록 의무화 - 지급방법(실습기관 선택) 1) 제주대학교 발전기금 장학금으로 출연하여 지급 2) 학생에게 직접 지원
※ 실습기관의 사정으로 현장실습을 중단 또는 취소하게 되는 경우, 실습생의 현장실습 교육과정 이수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실습지원비를 일할 계산하여 지원함		

나. LINC+사업단 실습학기제(현장실습) 지원내용

구 분		지원내용		비 고
참여 학생	도 내	실습비	- 실습일수 × 40,000원	
	도 외	실습비	- 실습일수 × 40,000원	
		숙박비	- 10,000원/1일 × 실습일수 - 당일 출퇴근이 불가능한 경우 한하여 지원	
		교통비	- 실습 참여학생 왕복 항공료 외 교통비 실비 지원	150,000원 이내 지원
	상해보험가입		- 실습기간 동안 상해보험 가입	

4. 실습학기제(현장실습) 유의사항

가. 참여대상별 의무사항

구분	의무사항
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습기업(관)의 내규 및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실습을 통하여 알게 된 실습기업(관)의 기밀을 누설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현장실습 도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현장실습지원센터로 연락하여야 한다. - 현장실습이 완료되었을 때 실습 최종보고서와 주간보고서, 출석부 등을 작성하여 실습 종료 7일 이내에 소속 지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실습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의무 가입 및 가입 서류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노동부고시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123조(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 시행일(2018. 9. 11.) 이후 현장실습생의 산재보험 적용범위 대학생까지 확대 · 가입방법: 근로기관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 '근로자 고용신고서' 제출 · 미가입 시 과태료 등 불이익 있음 - 현장실습 참여학생에 대해 실습기관 실습지원비 지급 의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사항 안내 및 안전 교육, 인권 보호 - 현장실습 참여 학생 관리 및 학생 출석부 등록, 학생평가서 작성 - 실습생의 적합한 부서 배치 및 실무 교육

나. 현장실습 운영 원칙

구분	내 용
실습기관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의 전공 분야와 연관된 기관을 우선으로 한다. - 학생의 보건·위생 및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기관이어야 한다. - 실습기관은 학생이 향후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데 필요한 지식·기술·태도를 익힐 수 있도록 실무 교육을 포함한 실무실습과정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현장실습 운영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실습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6~8시간, 연속 4주 이상 운영하며,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의 야간 현장실습은 운영할 수 없다. - 실습기관은 실습생의 실습수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습에 소요되는 비용 산정 및 부담 방법 등은 실습기관에서 결정한다.

다. 기타 사항

- 1) 실습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현장실습생이 1개월 기준 1일의 휴일을 활용할 수 있는 기준으로 운영하며 실습지원금을 지급함
 -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 규정 제6조 2항
 - 제주대학교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지침 제5조 2항

5. 문의

- 제주대학교 LINC+사업단 현장실습지원센터 064-754-3125, 4416
- 강경아(hyunslee@jejunu.ac.kr) / 김미경(roddl526@naver.com)